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치매환자 위치확인 가능 보조기기 지원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4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20
1. 행복GPS사업<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협약사업>	20
2. 행복GPS사업 무상보급 배회감지기 개요	21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9.

다. 회 부 일 : 2026. 1.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확인 기능이 있는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홀로 거주하거나 실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치매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며,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동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실종 예방을 위한 기기 지원 및 안전확인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치확인 기능을 갖춘 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거주하거나 실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방문 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안전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매환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실종 예방 및 안전 확인 목적의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취득 또는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실종 예방 및 안전 확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기 지원의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 확인의 방법, 제3항에 따른 동

<u>제12조의4</u>(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생략)	<u>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제12조의5</u>(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현행 제12조의4와 같음)
---	--

2. 검토 사항

□ 유전자 검사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CCTV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최근 6년간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종시 사망이나 사고 가능성도 높아 치매환자가 실종 후 사망상태로 발견되는 건수도 매년 80건 이상임.

< 시·도경찰청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2,131	12,272	12,577	14,527	14,677	15,502
서울	3,019	3,089	3,240	4,122	4,473	5,410
부산	1,086	1,162	1,186	1,297	1,289	1,399
대구	627	614	623	605	581	721
인천	688	678	690	786	803	797
광주	367	359	401	406	417	501
대전	331	317	288	348	353	339
울산	172	156	176	188	170	151
세종	0	29	30	14	37	34
경기	3,137	3,299	3,376	3,729	3,734	3,727
강원	198	202	210	403	269	220
충북	302	255	253	320	210	241
충남	374	319	316	371	395	253
전북	343	283	306	336	321	301
전남	338	340	298	272	260	215
경북	409	327	374	420	377	334
경남	607	715	691	771	822	700
제주	133	128	119	139	166	159

※ 출처: 경찰청

- 접수: 발생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건에 대한 당해연도 접수건을 포함
(例: '20년에 발생하였으나 '24년에 접수 → '24년 접수로 계산)

< 실종 치매환자 사망발견 현황 >

(단위 :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7	120	85	99	83	82

※ 출처: 경찰청

-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은 위치추적 기반의 배회감지기(GPS 단말기)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등록제, 배회 인식표 및 스마트 태그 보급, 실종 대응 협력체계 등임.
- 이 중 배회감지기 지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고, 실종되더라도 발견 가능성과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종 이후 첫 24시간 동안 경찰이나 가족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배회감지기의 보급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실종아동법」은 치매환자를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이에 보건복지부·경찰청은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부터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에게 매년 4천여 건의 위치추적기(배회감지기) 및 통신비(2년)를 지원하는 ‘행복 GPS사업’을 실시하고 있고²⁾, 아동권리보장원은 협약사업 대상이 아닌 정신장애인 등에 대하여 위치추적 단말기³⁾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센터) 위치추적단말기 지원 사업 개요 >

- (대상) 실종신고 이력이 있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내용) 2019년부터 장애인의 반복 실종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동의) 또는 실종신고 이력이 있는 장애인의 보호자 요청 시 장애인에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 (지원내역) 단말기 기기 구입 및 통신비(2년) 지원
 - * 2023년까지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중복배제를 위해 정신장애인 지원으로 변경

○ 위치추적단말기 지원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현황	86대	93대	169대	157대	118대	10	24

*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위치추적 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음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2) 【참고 1, 2】 참조

3) 위치 측위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로서 보호자가 정해 놓은 활동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기임.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실종 위험 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GPS 신호 추적 방식의 배회감지기 급여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2013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23조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하나인 기타재가급여를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 및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배회감지기는 기타재가급여의 하나인 복지용구에 해당하게 되어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를 구입 및 대여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횟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

3. 안전

수급자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

가. 관찰알림

실내·외 환경에서 수급자의 활동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에 따라 경보를 전하는 목적의 제품

- 1) 배회감지기
- 2) 배회감지기(태그형)
- 3) 낙상알림시스템

< 배회감지기 이용자 현황 >

(단위: 명)

년도별	배회감지기 이용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3,930	20	126	911	1,715	1,010	148
2021	3,989	34	131	916	1,699	1,056	153
2022	4,082	43	146	916	1,773	1,061	143
2023	4,293	43	131	916	1,908	1,149	146
2024	4,383	48	130	885	1,909	1,251	160
2025	4,366	39	125	834	1,940	1,260	168

주: 1) 이용자는 각 연도말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의 실거주자자격등급 변경 등 중복 및 사망자 포함

2) '25년도 말까지 태그형 배회감지기 제공 사례 없음

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 지원 >

- **(개요)**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누구나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기간·방식)** 사용가능 햇수 5년(급여 한도 1대), 대여 가능
※ 태그형은 구입 품목으로, 사용가능 햇수 2년(급여 한도 2개)
- **(비용)** 월 대여료 납부 ... 계약 가능 제품 기준 9,600원~21,300원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15%, 자격·소득수준에 따라 차등(0%~15%)
- **(절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시(공단) →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제품 선택·계약(수급자)
- **(등록제품)** 6개 제품(대여 5개, 구입 1개)

< 제품예시 >

Gper-L200(목걸이형)



T4S01AR0
(열쇠고리, 손목시계형)



CS06BHB01D
(태그형)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등에 근거하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치매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위치 태그나 배회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⁵⁾

□ 이상에서 본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치매관리법」에도 치매환자 보호·지원에 관한 일반 규정은 있으나 배회감지기와 같은 위치추적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음.

○ 특히, 사업별로 보면 “행복 GPS사업”의 경우 민간기업과의 협약 성립 여부에 따라 배회감지기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민간기업의 재정 여건상 지원 대수도 한정적이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도 지원기간이 2년으로 한시적임.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배회감지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상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5)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배회 및 실종위험이 있는 재가 치매환자와 실종신고 경험이 있는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태그 1개와 고리형 케이스 1개를 지원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쳐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치매환자를 위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제도 인지 부족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치매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배회감지기 지원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그 시행 여부나 지원의 수준이 달라져 지방자치단체별로 치매환자 실종 예방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위치확인 기능을 갖춘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둬으로써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개별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지원의 환자별, 기간별 및 지역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치매환자의 실종과 배회를 예방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⁶⁾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실종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치매환자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외출 능력 향상, 외출 시 불안 감소, 안전감 및 자신감 증가, 돌봄자와의 갈등 감소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돌봄자 입장에서는 실종에 대한 걱정 감소, 심리적 안정감 증가, 자유 시간 확보, 실종 시 탐색 시간 단축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2조의4제2항은 독거 치매노인과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 가구 형태는 치매 1인 가구가 52.6%에 달하는바, 독거 치매노인의 경우 인지저하와 돌봄 공백이 결합되어 실종·배회나 우울·고독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안전사고 위험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

○ 개정안은 독거 치매노인 외에 실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안전 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험군 치매환자란 배회·실종 이력자, 지문 미등록자, 가족돌봄 부재자, 신체질환 동반자 등으로, 이들은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 및 기능상태가 더욱 취약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것임.

< 치매환자 가구 형태 >

구분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동거 가구	기타
치매환자	52.6%	27.1%	19.8%	0.5%
경증	54.9%	27.9%	16.4%	0.8%
중등도	51.6%	29.0%	19.4%	0.0%
중증	25%	0.0%	75.0%	0.0%

자료 :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 참고로, 현재 단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노인복지법」⁷⁾ 등의 포괄적 복지·안전을 위한 책무 규정을 근거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 확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안부콜(Call Check)서비스나 방문 기반 안전 확인, AI 기반 안전모니터링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계⁹⁾하여 수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와 연계 서비스(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를 제공하는 사업임.

□ 개정안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확인 서비스가 치매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치매환자에 특화된 안전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실종·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및 응급 대응을 개선하고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8)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인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등에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부콜 서비스’를 도입(매일경제, “AI가 독거 어르신에 안부전화를...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전국 시군구 절반 이상 도입”. 2024. 9. 5.)

9) 보건복지부는 사업안내 지침 마련,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 관리·감독 및 평가, 정책연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광역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함

□ 다만,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지원은 치매환자의 기본권적 권리보호, 「실종아동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실종아동법」 및 그 시행령은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¹⁰⁾에게 개인위치정보¹¹⁾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목적 달성시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 4. (생략)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 ⑥ (생략)

-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도 「실종아동법」과 연계하여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¹²⁾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긴급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위치정보¹³⁾의 경우는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 3. (생략)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④ (생략)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⑩ · ⑪ (생략)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과 같이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를 지원하여 상시적으로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되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배회감지기 착용에 있어 본인 동의의 진정성과 보호자 동의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지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의 필요성과 치매환자의 기본권적 권리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도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실종 예방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4제5항)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유사 입법례¹⁴⁾를 참조하여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것임.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또한 개정안은 정기적 안전 확인 대상으로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위험군 치매환자”는 법률상 통일된 정의가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정책·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종·사고·돌봄 공백 위험이 높은 치매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독거 치매노인, 배회·실종 이력자, 가족 돌봄 부재자 등이 해당할 것인바,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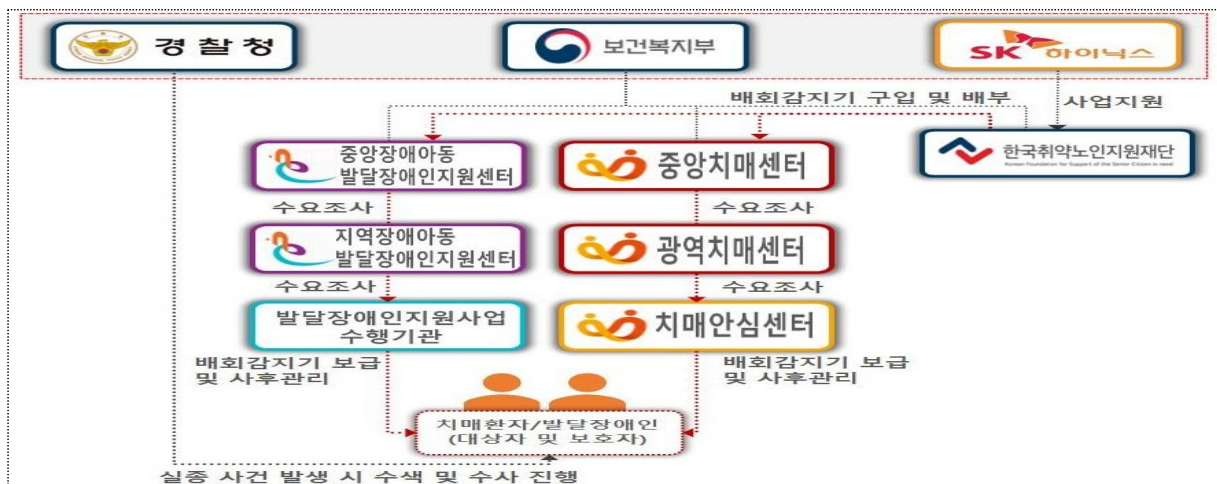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등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노인성 질병으로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수급자로서 복지용구인 배회감지기를 이용(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조기기 보급·비용 지원 규정 신설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기획예산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법」에 의해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동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근거, 치매환자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既추진 중이므로 별도 조항 신설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등 취득시 안전성 확보 조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특별히 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따르면 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1

□ 사업 개요

- (사업명) 복지부·경찰청·민간협력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행복GPS 사업)
- (사업내용) 민간협력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보급 및 통신비(2년) 전액 지원('21년~)
 - ※ 민간기업(SK하이닉스)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운영되어 연간 배부물량 제한
 - ※ (협약연혁) (1차, '17.8.)경찰청-SK하이닉스 → (2차, '21.7)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3차, '24.7.5)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 (지원대상)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 (사업 수행체계)
 - (SK하이닉스) 후원금 조성(행복나눔기금) 및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
 - (보건복지부) 배회감지기 보급<중앙치매센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경찰청) 사업 홍보, 실종 시 수색, 수사에 활용 및 사례관리



□ 연도별 보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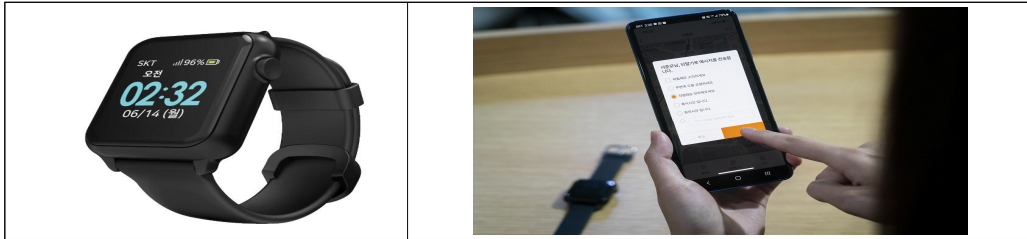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1.
치매환자	9,894	3,106	2,567	1,861	2,360
발달장애인	6,294	2,044	1,700	1,010	1,540
합계	16,188	5,150	4,267	2,871	3,900

※ 2023년의 경우 기기 모델 변경 및 단가 상승(이전 기종 대비 2배)으로 지원대수 감소

① 배회감지기 모델

- 손목시계 형태의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 “스마트 지킴이”
 - GPS형 위치추적, 날짜와 시간 LED화면 및 터치 기능 탑재



② 주요 기능

- (위치 확인 및 동선 확인) 보호자는 전용 어플(Smart 지킴이)을 통해 현재 위치와 주요 동선 확인
- (위치정보 공유) 필요시 여러 가족과 위치 공유 가능
- (안심존 설정) 사전에 착용자의 안심존을 설정하여 해당 권역을 진입·이탈시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 (긴급호출) 위기 상황시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SOS 호출 알림을 전송하여 위치정보 표기

③ 작동 방식

- SKT의 IoT전용망인 LTE Cat.M1을 활용한 서비스
- HPS(복합측위시스템) 측위기술을 적용하여 실내·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
 - 배회감지기 착용자의 위치정보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30분에 한 번씩 SKT통신망을 통해 갱신되며, SK텔레콤 전용 서버인 ‘스마트 안전플랫폼’을 통해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



※ 치매환자 등 무상보급 사업 참여시 별도 통신망 가입 절차는 필요 없으며, 이에 따른 통신료, 가입비 등 비용 부과 없음, 기기손상시 A/S 무상 제공